

# 사하구구세조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서

## 구세조례 개정내용 요약서

개 정 전 조 례	개 정 조 례 내 용	개 정 사 유
<p><b>조례 14조(지방세심의위원회)</b></p> <p>① 구세 및 부산직할시세중 도시 계획세와 공동시설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과세표준의 결정 기타 구세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</p>	<p><b>조례 14조(구세심의위원회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방세심의위원회를 구세심의 위원회로 명칭을 변경</li> <li>내용은 개정전과 같음</li> </ul>	<p>○ 지방세법 238조의 2항의 규정에 의함</p>
<p><b>조례 15조(납세의무자등)</b></p> <p>면허세는 령 제124조에 규정하는 각종 면허를 받은자에게 그 면허의 종류마다 매년 부과한다.</p>	<p><b>조 문 삭 제</b></p> <p>(면허세 납세의무자의 규정은 지방세법 시행령 124조에 면허의 종류와 지방세법 161조에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음)</p>	<p>○ 지방세법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 조례로 규정 불요</p>

개 정 전 조 례	개 정 조 례 내 용	개 정 사 유
<p><b>제 17조(과세표준 및 세율)</b></p> <p>면허세의 세율규정</p> <p>1 제1종 45,000원</p> <p>2 제2종 36,000원</p> <p>⋮</p> <p>6 제6종 6,000원</p>	<p><b>조 문 삭 제</b></p> <p>(지방세법 164조에서 면허세의 세율을 규정하고 있음)</p>	<p>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 조례로 규정 불요</p>
<p><b>제 19조(납세의무자등)</b></p> <p>재산세의 납세의무자 및 대상 규정</p>	<p><b>조 문 삭 제</b></p> <p>(지방세법 182조에서 재산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음)</p>	<p>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 조례로 규정 불요</p>
<p><b>제 27조(세율)</b></p> <p>재산세 세율에 관한 규정</p>	<p><b>조 문 삭 제</b></p> <p>(지방세법 제188조에서 재산세 세율을 규정하고 있음)</p>	<p>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 조례로 규정 불요</p>

개정 전 조례	개정 조례 내용	개정 사유
<p><b>제 28조(과세기준일 및 납기)</b>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 및 납기에 관한 규정</p>	<p><b>조 문 삭 제</b> (지방세법 189조에서 재산세 과세 기준일 및 납기를 규정하고 있음)</p>	<p>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조례로 규정 불요</p>
<p><b>제 29조(징수방법등)</b> 재산세 징수방법에 관한 규정</p>	<p><b>조 문 삭 제</b> (지방세법 190조에서 재산세 징수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)</p>	<p>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조례로 규정 불요</p>
<p><b>재산세 증과세 대상지역</b> : 조례로 제정된 바 없음</p>	<p><b>조례 제 22조(증과세대상지역)</b> • 지방세법 188조 1항 2호 3목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. (조례 신설)</p>	<p>○ 지방세법 188조 1항의 규정중 - 대도시내에서 주거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내의 공장에 대한 증과세 규정 개정에 의함 ○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상업지 및 녹지지역으로 정하도록 조례 신설</p>

개 정 전 조 례	개 정 조 례 내 용	개 정 사 유
<p><b>제 36조(과세대상)</b>                     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                      규정</p>	<p><b>조 문 삭 제</b>                      (지방세법 제234조 8항에서 종합                      토지세 과세대상 규정)</p>	<p>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                      조례로 규정 불요</p>
<p><b>제 37조(납세의무자)</b>                     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                     규정</p>	<p><b>조 문 삭 제</b>                      (지방세법 제234조 9항에서 종합                      토지세 납세의무자 규정)</p>	<p>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                      조례로 규정 불요</p>
<p><b>제 39조(과세표준 및 세율)</b>                     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                     에 대한 규정</p>	<p><b>조 문 삭 제</b>                      (지방세법 제234조 15항에서 종합                      토지세 과세표준 및 세율을 규정하고                      있음)</p>	<p>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                      조례로 규정 불요</p>
<p><b>제 47조(납세의무자)</b>                     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에                      대한 규정</p>	<p><b>조 문 삭 제</b>                      (지방세법 제244조에서 사업소세 납세                      의무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)</p>	<p>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                      조례로 규정 불요</p>

개 정 전 조 례	개 정 조 례 내 용	개 정 사 유
<p><b>제 49조(세율)</b></p> <p>사업소세 세율에 관한 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재산할 : 3.3평방미터당 500원</li> <li>• 종업원할 : 종업원 급여총액 의 100분의 0.5</li> </ul>	<p><b>조례 제30조(세율)</b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사업소세 세율에 관한 규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재산할 : 1평방미터당 250원</li> <li>• 종업원할 : 종업원급여 총액의 100분의 0.5</li> </ul> </li> <li>2.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재산 할 사업소세를 100분의 200(2배) 증과세</li> </o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방세법의 개정에 의함</li> <li>○ 지방세법 248조의 2항 규정에 의하면 -사업소세 세율은 조례로서 지방세법 에서 규정한 세율이하로 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거 사업소세 세율을 조례로 정함</li> </ul>